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(기)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,008,000원과 그 중

가. 2,758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 연 6%, 그다음 날부터
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,

나. 7,436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 연 6%, 그다음 날부터
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,

다. 5,814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

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